

공무원(사학)연금기금의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방안*

김수성**. 최원석***

Ⅰ 목 차	
I. 서 론	223
II. 선행연구의 고찰 및 공적연금기금 운용단계의 과세 현황	228
1. 선행연구의 고찰	
2. 현행 공적연금기금 법인세 과세 현황	
III. 기금 운용단계 이자소득 발생에 대한 원천징수 법리와 문제점	237
1. 원천징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	
2. 연금소득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	
3. 채권 이자소득 등 기금운용 단계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4. 기금 원천징수의 예규 분석을 통한 과세행정상 문제점	
5. 불필요한 과세행정비용 및 기회비용 발생	
IV. 공적연금기금의 운용단계 소득 원천징수 면제 방안	255
1. 공적연금기금 원천징수 면제 필요성	
2. 원천징수 면제를 위한 논리적 검토와 면제 방안	
3. 과세지위와 한시적인 조세특례와는 별개의 원천징수 면제 방안	
4. 원천징수 면제로 인한 기대효과	
5. 회계처리 개선방안 모색	
6. 원천징수 면제 기관 지정 예규 질의 및 시행령 개정	
V. 결 론	271

* 본 논문은 2024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 주장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

** 주저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 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투고일 : 2025. 3. 31. 1차수정일 : 2025. 4. 20. 게재확정일 : 2025. 5. 9.

<국문초록>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기금은 동일한 연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금 간에 과세 취급과 과세 지위는 서로 상이하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세제 취급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단계에서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되고 있어 기금 간 세제 형평성이 위배되고 있다.

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연금기금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금운용 수익 창출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금기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금운용단계에서 채권이자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어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과세행정이 수반되고 있고 아울러 기금운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법인세의 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연금기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과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금운용 단계에서 비과세하고 있는 연금소득과세 원칙에도 부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당국과 연금공단 및 비영리법인 등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세행정의 방지는 물론 기금운용 과정상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채권이자, 원천징수, 면제, 기회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I.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5개의 공적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있으며, 이밖에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이라 함) 및 군인연금기금과 별정우체국연금기금이 있다. 이들 연금기금은 공통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공적연금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부담금)를 받아 누적된 기금을 운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얻은 운용이익은 실제로 연금제도 가입자들이 퇴직할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활용된다. 연금기금의 목적상 연금제도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정 안정화 및 기금의 충분한 적립과 안정적인 기금운용 수익을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기금은 기금운용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및 부동산 등 다각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부터 운용해오던 전통적 자산인 채권과 주식 이외에 대체투자 등의 확대를 통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수익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제도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기에는 충분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장수사회의 진행이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여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연금기금으로부터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도록 끊임없는 연금제도 개혁과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각 연금기금도 최근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하면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 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금기금을 통해 발생한 운용 이익에 대하여 일부 연금기금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한 기금 적립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었다.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한 사학연금기금은 뒤늦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금운용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2013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세수 누출을 방지하고 운용이익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도록 하였다. 뒤늦게라도 한시적인 특례를 부여받아 기금운용 단계에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금소득 과세원칙 상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Exempted), 운용 시 면제(Exempted), 연금 수령 시 과세(Taxed)의 방식인 EET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¹⁾ 즉, 연금보험료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운용단계에서 비과세를 통해 과세를 이연해주며, 연금 수령단계에서 비로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등에 대해서는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법인의 지위(status)를 부여하거나, 공무원연금기금 등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지위를 부여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토록 하여 기금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보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과세를 하도록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과거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만 설정하였으나,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기금운용단계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국민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비과세법인

1)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부터 제도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불입 시 소득공제(Exempt)를 하고, 운용단계에서는 운용이익을 비과세(Exempt)하며, 연금 급여를 받을 때에 과세(Tax)하는 EET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에서 나타나는 비과세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4대 공적연금 기금의 세제 취급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기금운용 단계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금운용 단계에서 발생한 채권이자 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여전히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과세행정 발생은 물론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금운용에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월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 금액을 익월 10일에 납부하게 되는데 연간 약 3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며,²⁾ 동 금액은 다음해 4월 말경에 이르러서 원천징수되었던 전액을 고스란히 환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기금운용을 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기회비용이 큰 금액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법인세 납부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에 대하여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채권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과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원천징수제도의 개념에 비추어 현행과 같은 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기금운용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현행 과세체계가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 부합한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 과거 2000년대에는 사학연금기금의 채권 투자 금액이 1조 3천억 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최대 6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원천징수가 되었다. 반면, 2010년대에는 340억 원에 머물렀으며 2020년대 초반에는 저금리 시대로 선급법인세 금액이 210억 원 가량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고금리 시대로 인하여 그 금액은 다시 3~4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천징수의 개념은 법인세 납부를 대비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 미리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고 있어 법인세가 실제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원천징수는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과세행정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을 중심으로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사학연금기금은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³⁾ 그러나, 납부할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납부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등 이자소득의 운용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현행과 같은 원천징수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유보하고 그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은 연금제정에 긍정적인 양(+)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은 방안은 과세행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부합한 과세 체계의 구현이 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 개념에 부합한 과세 조치라 할 수 있다.

원천징수제도는 법인세 납부를 대비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 미리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기금 등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고 있어 법인세가 실제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연금기금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원천징수는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과세행정을 유발하고

3) 사학연금은 법인세신고를 수익사업만 하고 있다. 이는 자금운용의 수익과 부동산운영에 따른 회관사업 등의 수익을 합하여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 설정으로 법인세 납부액은 제로(0)이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2013년 법 개정 이후로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⁴⁾ 이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액 설정으로 인해 법인세 납부액이 제로(0)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기금에 대하여는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채권 등 이자소득의 운용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절차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금소득 과세원칙인 EET와 같이 기금운용 과정에서는 과세 및 원천징수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연금소득 과세원칙을 통해 현행 연금기금 운용단계의 법인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유사 연금의 예규 및 법 개정 사례를 통해 공적연금기금의 하나인 사학연금기금의 채권 이자소득 면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과 현행 공적연금기금의 운용단계의 과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비영리법인의 과세 형태를 살펴보고, 사학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금기금 운용단계에서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과세 법리를 살펴보고 현행 공적연금기금의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적연금기금 이외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일반 민간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에 따른 원천징수의 현황을 상호

4) 최근 사학연금기금은 이월결손금 80% 한도 적용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한 바가 있었으나, 2024년 5월 31일에 52억 원 전액을 환급받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법인세 납부의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운용 단계에서 법인세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무원임대 아파트 등의 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대략 1억 원 미만으로 납부하고 있다.

비교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공적연금기금 운용단계에서의 원천징수 면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고찰 및 공적연금기금 운용단계의 과세 현황

1.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에서 살펴보하고자 하는 것은 공적연금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현행 과세행정의 문제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크게 3개의 주제로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선행연구로는 원천징수에 관한 선행연구가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기금 과세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공적연금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소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우선, 원천징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형태 외 1(2020)의 연구가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현행 금융소득의 대부분이 원천징수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⁵⁾ 또한, 윤준석(2017)의 연구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

5) 조형태·윤재원, “금융소득 원천징수 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20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7~39면.

약에 비과세와 면제 등의 적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⁶⁾

그리고, 변혜정(2012)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원천징수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에서는 외국투자자의 Total Return Swap 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⁷⁾ 문필주(2019)의 연구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미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판례를 분석하였다.⁸⁾ 최완(2021)은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원천징수 의무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됨을 강조하였다.⁹⁾ 또한, 최원(2012)은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 및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는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적 법률관계를 맺는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¹⁰⁾ 그리고, 최원(2011)의 연구에서는 원천징수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현행법상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연말 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와 납세조합

6) 윤준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불복방법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1~28면.

7) 변혜정,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원천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투자자에 의한 Total Return Swap 거래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28권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249~279면.

8) 문필주,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에 대한 소고 : 미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9, 141~167면.

9) 최완, “원천징수와 납세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자동확정 논거와 최근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21, 35~73면.

10)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2권 제1집, 세경사, 2012, 33~87면.

에 의한 원천징수, 그리고 지방세법상 특별징수 등에 관련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¹¹⁾

그리고, 박종수 외 1(2012)의 연구에서는 현행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는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¹²⁾ 이밖에, 박태승(2012)의 연구에서는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주요 쟁점 중에서 소득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발생하는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대표자가 횡령할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문제 등을 위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¹³⁾

반면, 강남규(2007)도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천징수제도는 징세 편의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점차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음을 제시하였다.¹⁴⁾ 그리고, 강석훈 외 1(2010)의 연구에서는 해외투자펀드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¹⁵⁾ 또한, 강인애(1983)의 연구에서도 원천징수의무의 성격을 살펴보았다.¹⁶⁾

아울러, 오승현 외 1(2004)의 연구에서는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11) 최원, “원천징수의 개념에 관한 소고”, 『조세연구』 제11권 제2집, 세경사, 2011, 7~54면.

12) 박종수·장재형, “현행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6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2, 35~87면.

13) 박태승,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42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225~256면.

14)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13권 제2호, 세경사, 2007, 77~113면.

15) 강석훈·정광진, “해외투자펀드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법학평론』 제1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0, 422~459면.

16) 강인애, “원천징수의무의 성격”, 『계간 세무사』 통권 10호, 한국세무사회, 1983.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¹⁷⁾ 강대권 외 1(2016)의 연구에서는 특별법상 투자조합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는 특별법에 의해 결성되는 투자조합과 출자 조합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¹⁸⁾ 이밖에, 전병욱(2014)은 금융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¹⁹⁾ 그리고, 김수성 외 1(2017)의 연구에서는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해외투자 운용 시에 면세단체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미국 세법 892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세법상 공적연금기금은 국가의 일부(Integral Part)로 보는 견해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Controlled Entity)으로 보는 견해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²⁰⁾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적인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연금기금 중에서 국민연금기금은 비과세법인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원천적으로 면제되지만,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용단계 이익에서 발생한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는 불필요한 과세행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현행과 같은 과세체계는 국고주의 입장에서 과세 편리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오승현·김화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자본시장연구원 조사 보고서 04-01), 한국증권연구원, 2004.

18) 강대권·전병욱, “특별법상 투자조합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8권 제2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253~274면.

19) 전병욱, “금융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조세와 법』 제7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33~68면.

20) 김수성·최원석, “연기금의 해외투자 운용에 따른 면세단체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미국 Section 892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7, 45~75면.

본 연구에서는 원천징수의 본질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 기금운용 단계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므로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소득 과세원칙과 원천징수의 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연금기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행 공적연금기금 법인세 과세 현황

가. 우리나라 연기금의 기금 종류별 과세 현황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연금기금은 모두 68개가 있다. 사회보험성기금은 6개이며, 계정성기금은 모두 5개이다. 그리고, 금융성기금은 모두 8개이다. 우리나라 기금의 대부분은 49개로 사업성기금이 가장 많다. 참고로, 현행 우리나라 기금의 종류는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현행 우리나라 기금의 종류

구 분	기 금 명
사회보험성기금 (6개)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군인연금기금
계정성기금 (5개)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금융성기금 (8개)	기술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성기금 (49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기후대응기

구 분	기 금 명
	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학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에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화발전기금, 원자력기금, 언론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주택도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기금 관리운용 주체가 국가인 기금은 비과세 대상기금에 속하고 있다. 반면, 기금 관리운용 주체가 공단이나 공사 등인 법인세 과세대상 기금은 비영리법인에 속하고 있다. 이 중 기금운용 주체가 국가로서 기금의 운용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기금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과세취급을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관련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50%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어 기금운용수익의 반액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현재 연금기금 중에서 국민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기금과 유사한 과세대상 기금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공무원연금기금과 유사한 과세대상 기금 현황

기금	관리운용주체	법인 형태	법인세과세	조세특례부여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비과세법인	비과세	—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비과세법인	비과세	—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단	비영리법인	과세대상	부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비영리법인	과세대상	부여

나. 연금기금의 채권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 현황

현재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용단계에서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채권과, 어음종류인 발행어음, 표지어음, 기업어음이 있으며, CD 등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현행 세법상 비과세대상 연금에 속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비영리법인에 속하고 있어 일정부분 원천징수를 하고 일정 부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선급법인세로 이자를 수령할 때 마다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익년 4월에 환급을 받고 있는 반면, 신탁형자산은 매월 10일에 납부하고 이를 즉시 환급 조치하고 있다. 공적연금기금의 구체적인 원천징수 대상 운용상품은 다음 <표 3>과 같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기금 운용단계에서 원천징수대상인 금융상품은 채권, 어음(발행어음·표지어음·기업어음), CD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현재 비과세법인으로 취급받고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에 비과세되고 있다. 공적연금기금의 구체적인 원천징수 대상 운용상품은 다음 <표 3>과 같다.

< 표 3 >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상품 원천징수 대상 현황

구분	상품종류	원천징수 해당 여부			
		~2002. 12. 31.	2003. 1. 1. ~2005. 6. 30.	2005. 7. 1. ~2005. 12. 31.	2006. 1. 1. ~현재
채권	회사채 토지수익연계채권	○	○	×	○
	특수채 자산유동화채	○	○	×	○
	표지어음 전환사채	○	○	×	○
	국고채 금융채중 일부	○	○	×	○
금융 상품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	×	×	×
신탁형 자산	특정금전신탁 뮤추얼펀드	○	×	×	×
	공사채형수익증권 단기공사채형	○	×	×	×
	주식형수익증권 전환형수익증권	○	×	×	×
	뮤추얼펀드 투자일임계약자산	○	×	×	×
	발행어음	○	○	×	○
단기 자금	단기성정기예금 MMF	○	×	×	×
	보통예금이자	○	×	×	×
공공 자금	공공자금예탁금	○	×	×	×
원천 세율	—	20%, 15%	2005. 1. 1 14%로 세율 변경	14%	14%

다. 현행 사학연금기금의 채권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 현황

(1) 사학연금기금 선급법인세 현황

현재 사학연금기금은 2013년 법 개정 이후 2019년까지는 법인세 납부금액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사학연금기금은 법인세법 개정 노력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 설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학연금기금은 법인세 신고를 수익사업에만 하고 있다. 이는 자금운용의 수익과 부동산운영에 따른 회관사업 등의 수입액을 합하여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 설정으로 법인세 납부액은 제로(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중에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나중에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는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등 이자소득의 운용이익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원천세를 납부하고 다시 환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원천징수 대상 금융상품

현재 사학연금기금의 2023년 동안 기금운용을 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였던 금융상품별 선급법인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한해 동안 원천징수를 한 전체 선급법인세 금액은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6억 원 가량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채와 회사채로 대략적인 금액은 177억 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66.5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사학연금기금의 금융상품별 선급법인세 내역

(단위 : 천 원)

금융상품 분류	선급법인세 금액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국내 부동산 직접 투자	—	—	1,125	1,125	1,125
채권뮤추얼펀드(P)	62	10	9	5	—

금융상품 분류	선급법인세 금액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주식뮤추얼펀드(P)	5,928	7,277	3,521	5,625	1,080
주식뮤추얼펀드(V)	—	245	812	6,651	182
○○채	8,240,319	8,051,188	7,305,523	5,749,710	6,636,241
기타 ○○채	1,648,598	2,273,584	3,179,238	3,428,431	4,040,168
후순위채(○○)	3,498,510	3,413,656	3,127,216	2,910,692	2,902,581
중소기업진흥채	238,427	187,460	171,263	171,263	125,872
MBS(주택저당유동화채)	42,504	42,504	42,504	42,504	17,325
기타 ○○채	1,779,078	611,411	204,943	204,943	205,143
일반○○(선순위)	9,475,408	6,857,639	5,004,081	5,084,387	5,282,560
ABS(자산유동화채)	79,048	79,048	514,052	979,941	1,435,708
○○○채	1,565,641	1,606,066	1,727,341	1,701,816	1,742,410
합계	26,573,524	23,130,089	21,281,629	20,287,092	22,390,395

Ⅲ. 기금 운용단계 이자소득 발생에 대한 원천징수 법리와 문제점

현재 공적 연금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금액은 너무 과다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연금기금의 운용단계에서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천징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

가. 원천징수의 개념

원천징수란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원천징수의 목적은 개별 납세의무자에게 어려운 세금신고의 부담을 덜고, 분할 납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가가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세금 부담을 간소화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가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하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소득 귀속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구분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 귀속자인 연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의 흐름은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소득 귀속자에게 자금이 흐르며,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연기금을 대신하여 과세관청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나. 연기금의 원천징수에 따른 과세행정 비용 발생

연기금 운용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연기금이 운용하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에 대하여 증권회사 등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금액을 연기금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을 받는

자인 연기금으로부터 법에서 미리 정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납부토록 하는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기금의 운용에 따른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 및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평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연기금의 운용에 따른 법인세 징세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징세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연기금의 과세자료의 사전 파악이 가능함과 동시에 연기금 탈세의 방지 그리고 연기금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편의의 도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편의 도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로써 증권회사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징세비를 부담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인 연기금은 원천납세의 무자로서 납부의 시기를 앞당기게 하여 기회의 이익을 상실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납부할 세금이 없는 연기금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연금소득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

현재 연기금의 기금운용단계 과정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일반론을 살펴보고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세제는 보험료 납입의 각출(적립)·적립된 기금의 운용·급여 지급의 3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과세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연기금 운용단계의 법인세 과세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동일한 일관된 방향의 과세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연금소득 과세원칙을 정립할 때 연금제도 가입자의 지급능력기준(Ability-to-pay) 이외에 최저생계비기준(Standard-of-living)을 함께 고려하여 과세원칙

을 정립하여야 한다. 해외의 주요 연기금의 운용단계에서 전액 비과세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과세취급을 받고 있는 일부 연금 기금에 대하여 비과세기금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부합한 연금세제 과세원칙을 정립하여야 하며, 연금소득 과세원칙도 국제화라는 시류에 부합한 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금세제는 OECD나 EU모델에서 제시한 과세원칙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세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연금소득 과세 방식의 형태는 3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크게 미드방식과 블루프린트방식 및 카터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미드 방식(Meade Committee)은 영국의 제도로서 1978년에 시작된 방식이다. 사업주가 각출할 경우에는 경비로서 공제되고 있다. 반면, 종업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간단하게 TTE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반면, 연금 급여 지급 시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는 방식이다.²¹⁾

반면, 블루프린트 방식(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ETT 방식의 일종이다. 사업주 각출에 대해서는 경비로서 공제하고 있으며 급여로 간주하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으며, 종업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으며 연금 급부 시에도 과세하는 방식으로 ETT 방식이라 할 수 있다.²²⁾

한편,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연금소득과세방식인 카터보고서(Royal Commission On Taxation)는 EET 방식으로서 사업주 각출에 대해서는 경비로서 공제하고 있으며 급여로 간주하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으며, 종업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며 연금 급부 시에도 과세하는 방식

21) Meade Committee,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IFS, 1978.

22) David F. Bradford and the U.S. Treasury Tax Policy Staff,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 2nd Edition, Tax Analysts, Arlington, Va, 1984.

으로 EET 방식이라 할 수 있다.²³⁾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금소득 과세방식 형태 비교

단계별 취급	카터 방식	블루프린트 방식	미드 방식
사업주각출	경비로서 공제 급여로 간주하지 않음	경비로서 공제 급여로 간주하지 않음	경비로서 공제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
피용자각출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적립금 운용수익	비과세	과세	개인베이스 과세
연금급부	전액과세	전액과세	비과세

3. 채권 이자소득 등 기금운용 단계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²⁴⁾

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

현재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자들이 너무 많은 세무대리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과세자료의 확보와 징세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을 받는 자로부터 법에서 장한 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납부하는 징수 납부의무

23) Kenneth LeM. Carter,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Vol 3 : Taxation of Income*, Ottawa - Ontario : Privy Council Office, 1966.

24) 오승현·김화성(2004)의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21면을 참고함.

를 부담하게 하고 아울러 수급자로 하여금 세액 징수의 수인의무(受認義務)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①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 및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평준화 도모, ② 징세 사무의 간소화 및 징세비의 절약, ③ 과세자료의 파악과 탈세의 방지 그리고 ④ 납세의무의 이행에 대한 편의의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로써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징세비를 부담하게 하고 수급자인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납부의 시기를 앞당기게 하여 기회의 이익을 상실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원천징수제도가 위헌이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 보상도 없이 국가행정사무인 조세 징수 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조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그 이자 상당액만큼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고 따라서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천징수 규정은 징세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서 연유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 조세포탈로서 형벌까지 가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노예적 구속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나. 채권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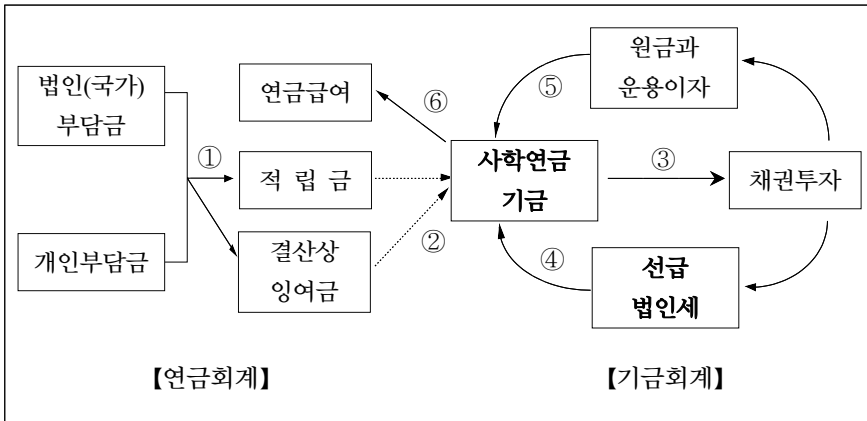
사학연금제도는 기금회계와 연금회계의 두 개의 회계로 구성된 바, 기금 운용단계의 회계는 연금을 지급하는 급부단계의 연금회계를 위한 도관체(conduit)에 해당된다.²⁵⁾ 사학연금기금을 도관체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5) 도관세제(conduit taxation)는 사업체의 실체는 있지만, 사업체 자체를 하나의 도관으로 취급하여 사업체에서 가득한 이익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분배받는 구성원에게 직접 과세한다. 즉, 기금의 실체는 있지만 기금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급여를 받는 연금수급자에게 연금

논지는 바로 투자를 통해 가득한 기금운용 이익이 전부 연금기금으로 재편입되고 이러한 재원은 미래 연금수급자에게 전액 분배되기 때문에 사학연금기금은 하나의 도관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사학연금기금의 재원흐름 과정을 통해 사학연금기금이 도관체임을 알 수 있다. 사학연금기금은 가입자로부터 법인부담금 및 국가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을 수입원으로 한 적립금이(①), 사학연금기금에 전액 편입하고(②), 사학연금기금을 운용 한 후(③) 원금과 운용이자를 기금에 재편입 된다(⑤), 또한, 선급법인세는 법인세 세무조정 후에 전액 환급받아 사학연금기금에 편입한다(④), 필요 시 연금급여의 재원으로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기도 한다(⑥). 따라서, 사학연금기금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도관이론을 적용하여 운용단계에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연금수급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사학연금기금의 재원의 흐름도



※ 자료 : 저자들이 작성한 것임.

4. 기금 원천징수의 예규 분석을 통한 과세행정상 문제점

가. 국민연금기금의 원천징수

(1) 비과세법인 적용으로 원천징수 면제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법인이기 때문에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않다.²⁶⁾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으로 2010년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종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관리 주체인 국민연금기금은 비과세법인으로 적용되어 왔었고²⁷⁾ 동 기금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²⁸⁾

기금을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은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지

26)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법인, 원천세과-134, 2010. 2. 10.).

27) 재무부법인22631-17, 1992. 1. 21. 및 법인22601-74, 1992. 1.10.

28) 법인46013-923 1995. 4. 4., 정부관리기금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아니한다.”라고 회신하였다.²⁹⁾ 또한, 채권 중도 매각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 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면제하였다.³⁰⁾

(2) 국민연금기금 관련 예규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규가 있다.³¹⁾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국·공채 등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³²⁾ 또한, 국·공채 등의 이자 소득에는 회사채 또는 금융채 등 모든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³³⁾ 게다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 무가 없는 비과세 정부관리기금이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입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기금이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채권이자에 대해서

29) 재무부 법인22631-17(1992. 1. 21.).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0) 재무부가 1993. 11. 30. 국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통신 주식매입을 요청하는바 정책적 차원에서 약 4,092억 원의 동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신규로 조성되는 자금으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회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전에 중도에 매각하였는바 이와 같이 중도에 매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31) 서이46013-11179, 2003. 6. 20.

32) 법인22631-17, 1992. 1. 21.

33) 법인46013-923, 1995. 4. 4. ; 법인46012-149, 1994. 9. 27. 및 법인22631-17, 1992. 1. 21.

는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즉, 동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이자를 수령하기 전에 중도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 원천징수가 없는 것으로 의제하였다.³⁴⁾ 그러므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³⁵⁾

나. 사학연금기금 등의 예규

우선, 사학연금기금과 관련한 질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학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다.³⁶⁾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관리운영 주체인 사학연금공단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사학연금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동 기금과 관리운영 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관리 운영 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³⁷⁾

반면, 공무원연금기금이 채권 거래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 과세관청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34) 법인46013-923, 1995. 4. 4.

35) 원천-608, 2009. 7. 14.

36) 법인, 원천46013-83, 2003. 3. 31.

37) 서이46013-10673, 2003. 4. 1.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금명의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공무원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기금명의를 고유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의 관리·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당해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 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리운영 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이나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도록 회신하였다.³⁸⁾

다. 유관기관 판례 등 검토

(1) 주택도시기금 예규 사례

최근 유사한 예규 변경 사례를 참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예규가 있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예규가 있었다.

[제목]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요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으로는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38) 법인, 서이46013-11065, 2003. 5. 28.

있는 법인세법 제7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가 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2에서 별도로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한국학술진흥재단 예규 사례

(재)한국학술진흥재단이 교육부와 농림부로부터 학술연구조성사업이나 농촌학생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경우 정부위탁 사업비에서 발생하여 이자소득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하고 있다.³⁹⁾

(3)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 예규 사례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동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⁴⁰⁾

39) 법규과-3512(2007. 7. 23.).

4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05. 9. 30.

(4)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규 사례

산업자원부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을 법인세법 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로 하여금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 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⁴¹⁾

(5) 전력산업기반기금 예규 사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⁴²⁾

(6) 지방공기업 예규 사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되어 ○○시로부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사업비 계좌에 예치하고 난 후, 해당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시키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⁴³⁾

(7) 임금채권보장기금 예규 사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에 의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임금

41) 서이46013-11094, 2003. 6. 3.

42) 서이46013-10505, 2003. 3. 12.

43) 법규소득 2010-248(2010. 9. 2. 사전답변).

채권보장기금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⁴⁴⁾

(8) 해외건설진흥기금 예규 사례

해외건설진흥기금에 대한 예금이자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⁴⁵⁾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기타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된다.

라. 민간 퇴직연금기금 등 채권이자소득 운용에 따른 원천징수 실태

우리나라 민간기업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든든한 희망파트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동일하게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022년 4월 출범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한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중장기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적립금 수준을 감안하여 주로 단기자금과 국내 채권으로만 기금을 운용해 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목표수익률인 4.5%를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

현재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및 일반

44) 법인46013-3197, 1999. 8. 14.

45) 소득22601-279, 1989. 2. 28.

퇴직연금기금과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사학연금기금은 공적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나 민간퇴직연금기금은 일반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차이점만 있을 뿐 기금운용 체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 특히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서 직접 및 수익증권 형태로 간접운용을 하고 있다, 반면, 민간 퇴직연금기금의 사업자는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채권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에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기금은 모두 운용이익을 연금수급자에게 분배해야만 하는 도관(Conduit)의 형태로 연금기금 운용단계에서는 과세를 유보하고 급부단계에서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소득이 지급될 때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독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에서는 연금기금의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불필요한 과세행정비용 및 기회비용 발생

가.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도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문제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기금 운용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2006년부터 기금운용이익 과정에서 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일부 금융상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매월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환급에 따른 세무조정 관련 세무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일부는 본 연구에서 다룬 원천징수의 이슈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례와 같이 국세청 예규 해석을 통해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국민연금이 2010년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은 것과 같이 사학연금도 동일하

계 법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원천세과에 예규 변경 추진하였음을 통해 예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 원천세과-134, 2010. 2. 10.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및 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나. 기회비용 발생의 문제점

사학연금기금이 포트폴리오에 의하여 자금운용을 수행하고 있는데,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따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⁴⁶⁾ 매년 투자금액에 따른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회비용을 추정해보면 아래 <표 6>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회비용을 산출해보면 대략 370억 원이 되며, 채권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회비용을 산출해보면 305억 원이 된다.

<표 6> 과거 채권이자 소득 등 기회비용 추정액

(단위 : 억 원, %)

연도	연도 말 채권 투자 금액	운용수익률	채권시간 가중수익률	선급법인세 금액	운용수익률 감안 기회비용 ⁴⁷⁾	채권수익률 감안 기회비용
2000	12,840	0.70	0.70	611	4.28	4.28
2001	16,092	8.90	8.90	407	36.22	36.22
2002	23,928	6.40	6.40	210	13.44	13.46

46) 만일 1월 1일에 채권을 매입하였다면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 선급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동 금액은 익년도 4월 말에 환급을 받게 되어 최장 16개월 동안 기금운용에 활용하지 못하고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47) 선급법인세 금액 × 운용수익률 × 9.5개월 / 12개월, 1월부터 그 이듬해 4월말에 환급받는 것을 가정한 월수입.

연도	연도 말 채권 투자 금액	운용수익률	채권시간 가중수익률	선급법인세 금액	운용수익률 감안 기회비용 ⁴⁷⁾	채권수익률 감안 기회비용
2003	25,799	7.40	7.40	245	18.13	18.13
2004	26,977	6.52	8.80	243	15.84	21.38
2005	25,012	8.74	1.22	175	15.30	2.14
2006	27,471	5.55	6.50	183	10.16	11.90
2007	22,479	9.77	3.02	191	18.66	5.77
2008	23,261	-4.07	7.78	79	0	6.15
2009	35,801	12.42	8.62	69	8.57	5.95
2010	43,417	10.43	8.70	342	35.67	29.75
2011	47,083	1.48	5.41	409	6.05	22.13
2012	52,515	6.42	6.01	399	25.62	23.98
2013	51,573	3.94	2.04	387	15.25	7.89
2014	58,888	2.05	6.55	361	7.40	23.65
2015	55,523	3.72	4.62	309	11.49	14.28
2016	56,280	3.89	2.83	297	11.55	8.41
2017	57,898	9.03	0.81	284	25.65	2.30
2018	58,966	-2.45	5.79	242	0	14.01
2019	58,612	10.94	4.13	224	20.72	9.25
2020	61,293	11.04	2.30	203	18.85	4.67
2021	67,457	11.95	-1.18	212	21.11	0
2022	63,145	-7.75	-6.49	231	0 ⁴⁸⁾	0
2023	75,900	13.46	8.78	265	29.72	19.39
계	-	-	-	-	369.68	305.09

※ 연도별 기금운용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회비용을 산출함.

현재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48) 운용수익률이 (-)일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0으로 산정함.

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의 선급법인세 예상액을 추정해 보면 다음 <표 7>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1.4% 증가율을 반영하였을 경우 300억 원의 선급법인세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학연금기금은 채권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하면서 채권 투자 금액이 7조 원 가량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채권이 자 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 추정액은 4백억 원 대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7> 과거 3년 및 향후 5년간 사학연금기금의 선급법인세 추정액

(단위 : 억 원)

연도	채권운용 규모	이자율	원천징수세율	선급법인세 추정액
2022년	68,000억 원	3.00%	15.4%	291.73억 원
2023년	69,000억 원	4.10%	15.4%	479.23억 원
2024년	71,000억 원	4.50%	15.4%	532.92억 원
2025년	72,000억 원	4.20%	15.4%	501.27억 원
2026년	73,000억 원	4.10%	15.4%	495.65억 원
2027년	74,000억 원	4.00%	15.4%	489.72억 원
2028년	75,000억 원	3.91%	15.4%	483.48억 원
2029년	76,000억 원	3.81%	15.4%	497.42억 원

※ 이자소득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기회이익을 상실함.

※ 과거 5개년 평균운용수익률과 평균채권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회비용을 산출함.

IV. 공적연금기금의 운용단계 소득 원천징수 면제 방안

1. 공적연금기금 원천징수 면제 필요성

가. 연금기금은 원천징수 면제 대상에 부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에 의거 설립된 기금으로서 다양한 기금운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득된 모든 이득에 대해서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한도는 법인세법 제29조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00% 전액을, 사업소득·각종 매매이익(주식매매이익, 채권매매이익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이익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연금지급, 급여 지급)에 사용·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법인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어 기금운용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노후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연금기금의 재정 고갈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바, 국가사업의 일환인 노후 소득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학

연금제도의 영구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연금기금의 장기·안정적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금기금 운용 단계에서 채권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연금제도 지원에 대한 정책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커다란 금액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입장에서는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금운용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권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4대 공적연금기금 원천징수 면제 동일 적용 타당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4대 공적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의 관리주체가 정부임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기금운용의 재투자로 활용하여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있으며, 2012년 법 개정을 통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활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⁴⁹⁾

그러므로 4대 공적연금 간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기금운용의 재투자에 활용하여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매년 22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선급법인세로 납부되고 있어 동 금액이 기금운용에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이듬해 3월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전액 환급을 받고 있어 기금운용 측면에서 타 연금기금에 비하여 추가적인 운용에

49)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나목 참조.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학연금기금의 채권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기금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 원천징수 면제 개선 추진 필요성

최근 각 연금공단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지급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오고 있다. 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모든 부서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연금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높은 기금운용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 기금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기금은 비과세법인으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기금으로서 세제상 유리한 기금이었다.

2016년도까지 사학연금 기금운용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었으나, 채권 매매이익 등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밖에 설정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과세가 되고 있고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⁵⁰⁾ 사학연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2006년부터 기금운용이익 과정에서 채권을 비롯한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세금 납부 및 환급에 따른 불필요한 세무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50) 과거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학연금기금은 2014년에 42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2017년에는 62억 원, 2018년에는 12억 원을 납부하였다.

2. 원천징수 면제를 위한 논리적 검토와 면제 방안

가.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기금으로 지정하는 방안

사학연금제도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금운용 이익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우선, 사학연금제도는 국가의 주도하에 특별법으로 태동되었고, 국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용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연금 사업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후 소득 보장 성격의 갖고 있는 바, 국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연금기금은 장래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기금으로서 연금재정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금기금으로 장래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연금충당부채를 지닌 기금으로서 연금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재정의 투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기 보다는 연금수급자가 연금급부를 수령하는 급부단계에서 연금소득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Dual Taxation)의 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현재 사학연금기금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고 있는 기금에 해당된다. 법인세 과세 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으로서 불필요한 과세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금은

용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법인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에 따른 기금운용 이익에 따른 원천징수를 달리 적용하기 보다는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기금 간의 원천징수 적용에 대한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4대 공적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천징수 면제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연금제도의 영속적 유지를 위해서 현재 사학연금 기금운용 이익이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 이자소득 등에서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행 과세행정을 더욱 간편하게 적용토록 관련 예규와 법 해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현재 사학연금기금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과 동일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해 준 예규와 동일하게 사학연금기금 또한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기금으로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2008년과 같은 조세특례 부여 방안

채권이자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순간에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는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14%의 소득세 및 1.4%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법인의 경우는 본래 14%만 원천징수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개인과 동일하게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기금과 같은 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법인세차감전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해당 기간 중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기 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세무 신고 과정에서 납부할 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2008년에는 금융기관이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도록 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다. 그 동안 금융기관들은 매월 과세당국에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에 납부하였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인 6개월 동안은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연기금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만 법인세 신고 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자금 활용의 기회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과거 6개월 동안 원천징수가 면제된 금융상품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국공채와 지방채, 내국법인이 발생한 회사채 등,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그리고 양도 가능한 예금증서뿐만 아니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어음 등이었다. 현재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부 법인은 채권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14%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기금이나 사학연금기금에 대하여도 2008년과 같이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기금은 기금운용 이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고 있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한다면 세금으로 납부하였던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세액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연기금에 대해서는 수익성 제고와 채권시장 활성화, 납세절차 간소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다.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부합한 과세체계 유지

연기금에 대해서는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부합한 과세방안으로

볼 수 있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제도는 당초 개인의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변경되어 그 실효성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과세지위와 한시적인 조세특례와는 별개의 원천징수 면제 방안

현재 국민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법인으로서의 과세지위를 갖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과세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관상 동일한 세제취급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과세법인은 모든 운용이익에 대하여 원초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일부 운용이익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과 각종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수동적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50%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법인세법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한시적인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원천징수의 문제는 조세

상 지위와 조세특례의 일몰규정과 무관하게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불필요한 과세행정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회비용의 문제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원천징수 면제로 인한 기대효과

공단은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아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로 인하여 기회비용 발생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을 익년도 법인세 신고 후 4월 30일에 환급 받는다. 이 때문에 원천징수에 따른 기금운용수익률을 감안한 30~50억 원의 기회비용이 연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선급법인세 금액은 과거에 비하여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기회비용의 확대도 원천징수 면제 추진이 필요하다.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과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매년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가능 또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회피가 가능하다. 현재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 말에 제출하며, 근로, 퇴직, 사업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지급 금액의 15%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원천징수의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원천징수 면제기관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략하게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과세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영평가에서 타 연금기금과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 기회비용 절감

사학연금기금은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아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매년 사학연금기금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을 익년도 법인세 신고 후 4월 30일에 환급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원천징수에 따른 기금운용수익률을 감안한다면 2021년의 경우에는 약 25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저금리 체계에서 고금리 체계로 돌아서 금리 인상에 따라 선급법인세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기회비용의 확대로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는 사학연금기금의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 과세행정비용 절감

사학연금기금은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사학연금기금은 법인세 신고를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로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만일,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 타 기금 간 형평성 유지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각종

공단은 기금평가 및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23년도부터는 기금평가와 경영평가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하였다. 과거에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 및 기금평가를 받아오고 있었다. 매년 우수한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연중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채권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대체투자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이 연속 3년 동안 11%대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높은 기금운용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 기금의 사외 유출이 발생하였던 적이 있다. 이로 인하여 사학연금기금 평가 시 국민연금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국민연금기금은 비과세법인으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기금으로서 타 연금기금에 비하여 세제상 유리한 기금이었다.

5. 회계처리 개선방안 모색

사학연금기금이 채권을 중도에 매수하게 되면 타인 보유분에 대한 이자를 채권 원금과 함께 지급하면서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정해진 이자 지급 일자에 이자를 수령할 때에는 채권이자와 미수금을 받게 된다. 이때 사학연금기금이 실제로 보유하게 된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에 대하여 15.4%의 금액만큼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에 이자를 수령하게 될 때에도 역시 3개월 이표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표채 액면 100억 원을 매수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해당 채권은 3개월 이표채이며, 표면이자율은 12%이고 이자지급은 매분기말에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 사학연금기금은 1월말에 채권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사학연금기금이 타법인으로부터

중도에 채권을 매수시의 회계처리는 다음 <표 8>과 같으며, 선급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표 9>과 같다.

<표 8> 채권 중도 매입 시 매수자의 회계처리

구 분	회계처리			
1월 31일 채권 중도 매입 시	차) 매도가능채권	100억 원	대) 현금 및 등가물	101억 원
	미수금(타인이자)	1억 원		
3월 31일 이자 수령 시	차) 현금	2.692억 원	대) 미수금	1억 원
	선급법인세	0.308억 원 ⁵¹⁾	채권이자	2억 원
6월 30일 이자 수령 시	차) 현금	2.538억 원	대) 채권이자	3억 원
	선급법인세	0.462억 원 ⁵²⁾		

<표 9> 채권 중도 매입 시 매수자의 수정 회계처리

구 분	회계처리			
1월 31일 채권 중도 매입 시	차) 매도가능채권	100억 원	대) 현금 및 등가물	101억 원
	미수금(타인이자)	1억 원		
3월 31일 이자 수령 시	차) 현금	3억 원	대) 미수금	1억 원
	선급법인세	0억 원	채권이자	2억 원
6월 30일 이자 수령 시	차) 현금	3억 원	대) 채권이자	3억 원
	선급법인세	0억 원		

반면, 매도자의 입장에서 사학연금기금에 채권을 중도 매각하였을 경우의 매도자의 회계처리는 다음 <표 10>과 같으며, 선급법인세를 면제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표 11>과 같다.

51) 2억 원 $\times$ 15.4% = 0.308억 원.

52) 3억 원 $\times$ 15.4% = 0.462억 원.

<표 10> 채권 중도 매도 시 매도자의 회계처리

구 분	회계처리			
채권 중도 매각 시 (1개월 이자 지급)	차) 현금	100억 원	대) 매도가능채권	100억 원
	선급법인세	0.154억 원	현금 및 등가물	1억 원
	현금	0.846억 원		

<표 11> 채권 중도 매도 시 매도자의 수정 회계처리

구 분	회계처리			
채권 중도 매각 시 (1개월 이자 지급)	차) 현금	101억 원	대) 매도가능채권	100억 원
	선급법인세	0억 원	채권이자	1억 원

6. 원천징수 면제 기관 지정 예규 질의 및 시행령 개정

가. 국민연금기금과 유사한 예규 질의

(1) 국민연금기금의 원천징수 면제 사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한다.⁵³⁾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국가재정법을 적용받고 있는 기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받고 있어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

53)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원천세과-134(2010. 2. 10.) 및 법규과-453(2022. 2. 11.).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소득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다. 법인세법 제73조의2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법인세가 원래부터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 혹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예규 질의를 통한 원천징수 면제 시사점 모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게 채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기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의를 하여 명확한 법해석을 근거로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기금운용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받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국가의 조세특례 조치로 인하여 법인세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로, 법인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3조의2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법인세가 원래부터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 혹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면제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을 받고자 한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소득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73조의2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⁵⁴⁾ 등에 의거 법인세가 원래부터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 혹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면제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포함 되는지 여부

54)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나.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원천징수 면제 기관 입법안 마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는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 목 이외의 부분에서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중략 …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중략 …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과 같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중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한정),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으로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된 소득,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채권 등 이자 수입을 추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표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2> 법인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현행	개정안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 <2009. 2. 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이하 중략)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이하 생략)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 <2009. 2. 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이하 중략)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이하 생략)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8. 추가 : <u>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채권 등 이자수입</u>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적연금기금의 하나인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현황을 살펴보고 원천징수의 개념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일부 비영리법인과 연금기금을 대상으로 현행 원천징수 현황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과세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동일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의 관리주체가 정부임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기금운용의 재투자로 활용하여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있어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어 법인세는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다. 이에 4대 공적연금 간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고 기금운용의 재투자에 활용하여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학연금기금은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원천징수되어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금운용에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동 금액을 고스란히 환급을 받고 있어 기금운용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기금을 운용하는 연금기금뿐만 아니라 일부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세청 질의를 통한 법 개정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국세청 질의 및 자문을 참고하여 다양한 원천징수 면제 방안을 강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원천징수 개념에 비추어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배제에 관한 논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법 개정의 기초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에 따라 비과세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리 운용에 따른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동일 성격의 기금이면 동일한 세제 적용이 되어야 할 것

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8개의 연기금이 있는데 각 연기금은 법인세 발생액에 따라 원천징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연기금은 크게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비과세법인과 공무원 연금기금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비과세법인은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 후 세무조정을 거쳐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고 있다. 서구에서는 연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대해서 국제적 비교 분석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13권 제2호, 세경사, 2007.
- 강대권·전병욱, “특별법상 투자조합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8권 제2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 강석훈·정광진, “해외투자펀드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법학평론』 제1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0.
- 강인애, “원천징수의무의 성격”, 『계간 세무사』 통권 10호, 한국세무사회, 1983.
- 김수성·최원석, “연기금의 해외투자 운용에 따른 면세단체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미국 Section 892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7.
- 문필주,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에 대한 소고 : 미신고 및 과소 신고납부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9.
- 박종수·장재형, “현행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6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2.
- 박태승,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42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 변혜정,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원천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투자자에 의한 Total Return Swap 거래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28권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 윤준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불복방법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 오승현·김화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04-01), 한국증권연구원, 2004.
- 전병욱, “금융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조세와 법』 제7권 제1호, 서울시

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조형태·윤재원, “금융소득 원천징수 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20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최 완, “원천징수와 납세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자동확정 논거와 최근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21.

최 완, “원천징수의 개념에 관한 소고”, 『조세연구』 제11권 제2집, 세경사, 2011.
_____,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2권 제1집, 세경사, 2012.

2. 국외 문헌

David F. Bradford and the U.S. Treasury Tax Policy Staff,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 2nd Edition, Tax Analysts, Arlington, Va, 1984.

Meade Committee,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IFS, 1978.

Kenneth LeM. Carter,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Vol 3 : Taxation of Income, Ottawa - Ontario : Privy Council Office, 1966.

<Abstract>

**Exemption from Withholding Tax Bond Interest Income
from Government Employees(Teachers') Pension Fund**

Su Sung Kim* & Won Seok Choi**

Currently, the four major public pension funds,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Fund, are performing the same pension service. However, tax handling and taxation status are different between each fund. As corporate tax is not actually paid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ax treatment is applied almost the same. Nevertheless, some funds are still withheld from bonds, interest income, etc. at the fund management stage, violating tax equity between funds.

The pension fund operates the fund through various portfolios to ensure stable retirement income for subscribers, and the creation of stable fund management profits occupies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pension fund. In consideration of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granted a special tax exemption to establish the entire reserve for purpose-built projects for the operating profits of the pension fund. There is currently no significant issue of corporate tax on operating profits generated during the pension fund management stage. If bond interest income occurs during the fund management stage, withholding tax is still applied to some funds, which entails unnecessary tax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re is no tax to pay, and opportunity costs for fund management are incurred.

This study aims to raise the problem of the current tax administration, which applies withholding tax to pension funds that do not actually generate corporate tax payment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rgue as follows.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and Teachers' Pension Fund should be designated as institutions that exempt from withholding tax on interest income such as bonds. Currently, the operating profits of the

* Primary Author : Ph.D. of Taxation, Teachers' Pension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and Teachers' Pension Fund should be included in the range of incom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ncome that is not subject to or exempt from corporate tax. This can be said to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pension income taxation, which is not taxed at the fund management stag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pension fund,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the exemption from withholding tax for bond interest income generated in the fund management stag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basic purpose of withholding tax to policy authorities, pension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and suggests measures to prevent unnecessary tax administration as well as reduce opportunity costs in the fund management process.

▶ **Key Words** :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teacher's pension fund, bond interest, withholding tax, exemption, opportunity cost, reserve for unique purpose business

